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6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오세희 · 강경숙 · 김원이  
이광희 · 박희승 · 박정현  
장철민 · 이수진 · 김현정  
김영호 · 이용우 · 이주희  
김한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 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책자금 용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용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용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78조의2 및 제7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의2 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 등

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이하 “정책자금 융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제3자 부당개입”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주고 신청기업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기업을 속여 정책자금 융자에 관한 자문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이 담당·처리하는 정책자금 용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청기업 또는 그 대표자·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신청 대행을 하여 주거나 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5.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신청기업을 속이는 행위

제78조의3(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용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용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벌칙) ① 제78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8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청탁하고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제1항 본문 중 “제84조의”를 “제84조 또는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

5. 제78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책자금 용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기업을 속여 정책자금 용자에 관한 자문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이 담당·처리하는 정책자금 용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청기업 또는 그 대표자·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신청 대행을 하여 주거나 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5.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신청기업을 속이는 행위

<신 설>

제78조의3(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용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용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4조의2(벌칙) ① 제78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

5. 제78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